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제 정 2010.09.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채무증권, 국내상장지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 중 채무증권,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①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구 분	안정성	거래효율성	정보제공능력	기타
배점기준	20%	30%	30%	20%

②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구 분	리서치	세미나	운용지원
배점기준	40%	30%	30%

제4조(평가방법) ①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아래 원칙에 의거 평가한다.

1. 평가 및 선정은 분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자운용본부장 승인을 득하여 평가 주기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2. 평가주체는 채권운용팀의 각 운용역(담당자)과 트레이더, 신용분석가로 하며 투자운용본부장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3. 투자중개업자는 전 증권사, 선물사를 대상으로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기타 당사기여도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4. 안정성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의 재무건전성(영업용순자본비율, 자기자본),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업무담당자(Broker)의 상품운용여부 등을 참고하여 평가

5. 거래효율성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업무담당자의 매매체결률, 호가신속성, 매매정보의 제공 및 유용성 등을 참고하여 평가
6. 정보제공능력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업무담당자의 시장정보의 제공 및 유용성, 세미나, 제도·정책 등의 정보, 신상품 아이디어 제공 등을 참고하여 평가
7. 기타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의 편의성, 성실성 및 신뢰성, 당사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
8. 상기평가항목 이외 채권운용팀 내부합의 및 투자운용본부장의 결재절차를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음
9. 평가결과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지라도 필요할 경우(고객의 요구, 당사에 손해를 끼친 증권사 등)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 탈락사 중 최상위 평가점수를 받은 기관으로 대체 가능
10.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매시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선정 가능

②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아래 원칙에 의거, 평가한다.

1. 평가 및 선정은 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자운용본부장 승인을 득하여 주기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2. 평가 및 선정주체는 주식운용팀, 리서치팀의 각 운용역(담당자)과 애널리스트로 하며 투자운용본부장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3. 투자중개업자는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리서치, 세미나, 운용지원 3개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4. 리서치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 및 업무담당자의 리서치 적절성, 당사 제공여부, 운용에 공헌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
5. 세미나 평가는 각 투자중개업자 회사 및 업무담당자의 당사 세미나 주관여부, 내용의 질적 공헌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
6. 운용지원 평가는 리서치나 세미나를 주관하는 각 투자중개업자의 업무담당자(애널리스트, 법인부)의 운용공헌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

7. 상기평가항목 이외 주식운용팀 내부합의 및 투자운용본부장의 결재절차를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음
8. 평가결과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지라도 필요할 경우(고객의 요구, 당사에 손해를 끼친 증권사 등)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 탈락사 중 최상위 평가점수를 받은 기관으로 대체 가능

제5조(약정배분기준) ①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약정배분기준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장외거래가 중심인 채권거래의 특성상 투자중개업자는 평가주체들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이 60점(보통) 이상인 회사 중 증권사는 상위 25개사, 선물사는 상위 5개사를 선정함.
3. 특정회사 최대 배정가능한도는 분기별 50% 이내로 함
4. CD, CP 의 주요 중개기관인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당사 필요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거래사에 포함시킴
5. 국고채, 특수채, 은행채를 제외한 채권의 거래시에는 장외 거래라는 채권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대상으로 선정된 투자중개업자 이외의 기관과 거래 가능
6. 외화표시채권은 매매와 중개기관의 특성상 거래시 투자운용본부장의 개별승인을 득하여 거래 가능
7. 투자중개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기간 중 중요한 Penalty사항(매매정보유출, 주문실수, 결재실수 등) 발생시 거래중단 가능

②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약정배분기준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함
2. 각 평가항목을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을 4:3:2:1의 가중치 배점. 각 등급별 증권사수가 일정하게 배정한 후 항목과 등급점수를 합계하여 Class 1, 2, 3으로 분류
3.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상위 15개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약정배분
4. 평가점수합계가 기존 선정사 보다 높은 경우 신규로 편입하고 기존 선정사는 탈락

5. 평가 후 실제배분 수행은 익월에 적용
6. 투자중개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기간 중 중요한 Penalty사항(매매정보유출, 주문실수, 결제실수 등) 발생시 거래중단 가능
7. 관계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계사 배정분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

제6조(보관 및 관리) ① 매분기별(매월)로 제4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역과 전분기(혹은 전월) 실행내역을 투자운용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부서에서는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평가 및 실행내역 자료를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2010년9월1일)

제1조 (시행일) 동 기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